

#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정	2017. 7. 18.
개정	2021.12. 3.
개정	2023.12.18.
개정	2024. 8.23.
개정	2025. 8.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 ② “국가대표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본 협회가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 ③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본 협회가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해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④ “경기임원”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 ⑤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⑥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단, KBO에서 활동한 지도자는 KBO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로 경기 지도경력을 갈음한다.
- ⑦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⑧ “강화훈련”은 본 협회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협회 산하 시·도지부 선정 및 파견 유소년대회, 생활체육 국가대표 선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2.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3.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사항
4. 국가대표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5.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6.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7. 국가대표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표창추천 및 징계 상신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7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야구 또는 소프트볼을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요건)**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협회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 ①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본 협회의 이사회에 추천한다. 본 협회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트레이너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트레이너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본 협회장에게 추천한다. 본 협회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트레이너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

받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0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협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협회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④ 종목별로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선수가 참가할 수 없는 종목 또는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제12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 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에서 본 협회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장이 선발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프로종목의 지도자

2.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3.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4.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대표 지도자(코치에 한함)의 경우, 공개 선발 공고 이후 마감일까지 지원자가 없어 추가연장 공고(7일간) 후에도 지원자가 응시하지 않아 국가대표 지도자(감독)가 분야별 코치를 추천한 경우

④ 위원회가 제3항 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

⑦ 대회의 경기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본 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이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본 협회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이 규정이 정한 종목별 '선수 평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별지] '국가대표(야구) 선수 평가기준', '국가대표(소프트볼) 선수 평가기준'

③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제1항과 달리 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이 때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선수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체가 추천에 동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선발할 경우 선발 방법 및 절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한다.

- ⑥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차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⑦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국가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단, 선수선발 및 공식 파견 요청 후,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의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협회 규정 및 지침 위반”에 근거하여 해당 단체 소속 지도자 및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 시 제외할 수 있다.

- 제14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협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본 협회,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 of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협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협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

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본 협회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

2. 종목별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채용에 지원한 자

**제17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대회의 국가대표로 확정된 날부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시까지로 한다.

**제19조(국가대표 및 트레이너의 임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관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9.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20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본 협회는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3.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제22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의 제·개정)** ①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정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강화훈련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칙(2017.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구)대한야구협회, (구)대한소프트볼협회, (구)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21.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프로 종목인 야구 종목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적용일 까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제10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제10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부칙(2021. 12.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3.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4.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대표(야구) 지도자 선발 평가기준

## ● 배점 개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 국내·국제대회 성적 40%,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평가 성적 60%를 반영한다.

단, 동률일 경우, 기타 가점 사항을 반영하여 지도자를 선발한다.

- ① 기타 가점 사항을 반영해도 동률일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 평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총 배점이 동률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최종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자를 선발한다.
- ② 위 항의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위원 평가 총 합산 포인트가 높은 지도자를 선발한다. 이 때, 위원 평가 배점을 위한 순위 결정 시와 동일하게 획득한 포인트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다.

## 1. 국내·국제대회 성적(40%)

가. 배점기준 : 지원자의 국내 및 국제대회입상성적을 기준으로, 1위 40점, 2위 35점, 3위 30점, 4위 25점, 5위 20점, 6위 15점, 7위 10점, 8위 5점, 9위 0점을 차등 배점한다. 단, 국내 및 국제대회 입상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0점을 배점한다.

### 나. 국내대회 성적 포인트

- ① 대학부 : 최근 2년간 U-리그 조별 우승, 왕중왕전 및 전국대회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지도자 중 각 대회 성적 점수에 따라 합산하여 성적을 배분한다.
  - U-리그 조별 우승(10포인트), U-리그 왕중왕전 및 전국대회 우승(30포인트), 준우승(20포인트), 4강(10포인트)
- ② 프로야구 : 최근 8년간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지도자(KBO 리그 등록 기준) 중 KBO 리그 정규시즌 성적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지도자 중 리그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합산하여 성적을 배분한다.
  - KBO 리그 : 1위(30포인트), 2위(20포인트), 3위/4위(10포인트)
  - 퓨처스리그 : 1위(20포인트), 2위(10포인트), 3위/4위(5포인트)
  - \* 최근 8년의 기준은 지도자 선발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년도부터 8년을 의미한다.
- ③ 18세이하부 : 최근 2년간 주말리그 권역별 우승, 왕중왕전 및 전국대회 4강 이상 또는 전 팀 참가 전국대회 8강 성적을 거둔 지도자 중 각 대회 성적 점수에 따라 합산하여 성적을 배분한다.
  - 주말리그 권역별 우승(10포인트), 주말리그 왕중왕전 및 전국대회 우승(30포인트), 준우승(20포인트), 4강(10포인트), 전 팀 참가 전국대회 8강(5포인트)

④ 12·15세이하부 : 전국대회 4강 이상의 성적 또는 등록 전 팀 참가 전국대회 8강의 성적을 거둔 지도자 중 각 대회 성적 점수에 따라 합산하여 성적을 배분한다.

- 전국대회 우승(30포인트), 준우승(20포인트), 4강(10포인트), 전 팀 참가 전국대회 8강(5포인트)

※ 최근 2년의 기준은 지도자 선발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년도 및 그 전년도를 의미한다. 단, 최근 1년 이상 전국대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별도의 기간을 심의, 확정해 적용할 수 있다.

다. 국제대회 성적 포인트

-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 파견 및 수상 경력에 따라 아래 포인트를 부여한다.

구분	국제대회			
	WBSC	올림픽	BFA	아시안게임
30점	우승	좌동		
20점	준우승	"	우승	좌동
10점	4강	"	준우승	"

- 국제대회 경력은 최근 5년간으로 한다.

※ 최근 5년의 기준은 지도자 선발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년도부터 그 전년도 역순으로 5년을 의미한다.

\* WBSC :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orld Baseball Softball Confederation)

\*\* BFA : 아시아야구연맹(Baseball Federation of Asia)

\* 배점산출 例

입상성적	획득포인트	순위	배점
우승2회, 준우승 1회	80포인트	1	40
우승2회, 4강1회	70포인트	2	35
우승2회	60포인트	3	30
우승1회, 준우승 1회	50포인트	4	25
우승1회, 3위	40포인트	5	20
우승1회	30포인트	6	15
준우승1회	20포인트	7	10
4강1회	10포인트	8	5

※ 8위까지 순차적 배점 산출(9위-0점)

- 획득포인트가 동일한 경우 배점순위는 우승(리그 제외)을 우선으로 한다. 우승 획득 포인트가 동일할 경우 전 팀 참가 전국대회 포인트를 우선한다.

- 입상성적과 획득포인트가 동일할 경우 국제대회 포인트를 우선으로 한다.
- 상기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도 획득포인트가 동일할 경우 동일 순위로 산출하여 배점하며, 차점자는 동일순위 이후 차순위 배점으로 한다.

**2.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평가 성적(60%)**

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평가 대상자는 공개모집에 응한 국내·국제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한다. 공개모집에 응한 지도자가 모집인원과 동일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이후에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도자 선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나.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지도자 중 지도자 항목을 평가하여 배점하며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1위 60점, 2위 50점, 3위 40점, 4위 30점, 5위 20점, 6위 10점, 7위 0점으로 차등 배점한다.

다. 지도자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경기운영능력	지도 통솔력	지도자 품행	운영계획서 평가
10포인트				
8포인트				
6포인트				
4포인트				
2포인트				
계	1위 60점, 2위 50점, 3위 40점, 4위 30점, 5위 20점, 6위 10점			

- 각 지원자에 대한 평가위원 각 항목별 합계점수에서 개인별로 획득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 상기 조항으로 적용한 합산포인트가 동일할 경우 동일 순위로 산출하여 배점하며, 차점자는 동일 순위 이후 차순위 배점으로 한다.

● 기타사항(\*동률 시 적용 추가점수)

- 지원자의 평가 후 1, 2항목에서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발에 반영한다.

구분	수상경력
20점	- 김일배지도자상
10점	- 협회 공로상(특별상 등) - 백구회, 일구회

- 수상 경력은 최근 2년간으로 한다.

※ 최근 2년의 기준은 지도자 선발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년도부터 그 전년도 역순으로 2년을 의미한다.

# 국가대표(야구) 선수 선발 평가기준

□ 국가대표(야구)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선발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가관이 뚜렷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국내 최고의 선수를 선발한다.
2. 각종 국내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포지션별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를 선발한다.
3. 선수 선발은 특정팀의 선수나 특정 선수에 구애받지 않고 각 포지션별로 기록(성적)을 참고하여 가장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를 선발한다.
4. 공정하고 우수한 선수 선발을 위하여 전년도 및 국제대회의 기록(성적)을 참고할 수 있다.
5. 국내대회의 적응능력, 기초체력 및 기량, 부상상태, 현재 몸상태에 대해서는 해당(소속팀) 감독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6. 선수 선발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7. 각 포지션별 선수 선발의 균일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KBO 소속 선수의 경우 해당 리그 성적을 참고할 수 있으며, 유소년(12세·15세이하부) 선수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18세이하·대학부

가. 투수 : 6경기 이상 출전하고 18이닝 이상 투구한 선수 또는 2승 이상 또는 탈삼진 25개 이상

나. 포수 : 10경기 이상 출전하고 30타석 이상인 자 중 타율 2할 5푼 이상 기록한 선수 또는 홈런 1개 이상 또는 도루 3개 이상

다. 내야수 : 10경기 이상 출전하고 30타석 이상인 자 중 타율 2할 7푼 이상 기록한 선수 또는 홈런 1개 이상 또는 도루 5개 이상

라. 외야수 : 10경기 이상 출전하고 30타석 이상인 자 중 타율 2할 8푼 이상 기록한 선수 또는 홈런 1개 이상 또는 도루 7개 이상

## ② 상기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가. 최근 2개년동안 개인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선수

(최근 2개년이란 선발 당해연도와 직전연도를 뜻한다. 단, 미기상 제외)

나. 5월 이전에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경우, 선발 전년도 성적이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

다. 7항의 경기기록 기준에 미달하나 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경기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경기력이 월등하여 추천하는 선수

라. 코로나-19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선발 당해연도 전국대회 규모가 축소 개최되는 경우

# 국가대표(소프트볼) 선발 평가기준

## ○ 지도자 선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고
		25	21	17	13	9	
국가대표 감독	국가대표 감독 지원 동기, 목표	25	21	17	13	9	*4개의 항목을 평가(100점 만점)하여 경기력향상 위원회 위원 평가점수(합계)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제일 높은 지원자를 해당 지도자로 선발.
	본인의 장단점, 그 장단점이 국가대표 감독직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25	21	17	13	9	
	국가대표 팀 운영 계획	25	21	17	13	9	
	선수 인성 및 팀워크 관리	25	21	17	13	9	
국가대표 코치	국가대표 코치 지원 동기, 목표	25	21	17	13	9	
	본인의 장단점, 그 장단점이 국가대표 코치직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25	21	17	13	9	
	국가대표 코치의 역할	25	21	17	13	9	
	선수 인성 및 팀워크 관리	25	21	17	13	9	
국가대표 트레이너	소프트볼 종목에 대한 지식	25	21	17	13	9	
	국가대표 트레이너 지원 동기, 목표	25	21	17	13	9	
	포지션 별 트레이닝 계획	25	21	17	13	9	
	선수 부상, 재활 관리 계획	25	21	17	13	9	

## ○ 선수 선발 평가기준

구분	기준	비고
투수	1. 소속팀 총경기의 25% 이상 출전하고 1배수 이닝을 투구한 선수 또는 2승 이상 또는 탈삼진 10개 이상인 선수	* 위원장 또는 지도자 추천에 의한 선발 최소화, 추천 선발은 국가대표 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  * 선발일 기준 성적 인정 범위 - 전년도 성적
포수	1. 소속팀 총경기의 50% 이상 출전하고 10타석 이상인 선수 중 타율 2할 4푼 이상인 선수 또는 홈런 1개 이상 또는 도루 3개 이상인 선수	
내야수	1. 소속팀 총경기의 50% 이상 출전하고 10타석 이상인 선수 중 타율 2할 5푼 이상인 선수 또는 홈런 1개 이상 또는 도루 5개 이상인 선수	
외야수	1. 소속팀 총경기의 50% 이상 출전하고 10타석 이상인 선수 중 타율 2할 6푼 이상인 선수 또는 홈런 1개 이상 또는 도루 7개 이상인 선수	
기타	1. 그 외 추천 우수 선수 2. 상기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 - 위원의 만장일치로 경기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경기력이 월등하여 추천하는 선수 -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선발 기준이 되는 전국대회가 축소 개최 되는 경우	